

공직자윤리법 일부개정법률안
(김민전의원 대표발의)

의안 번호	17448
----------	-------

발의연월일 : 2026. 3. 13.

발 의 자 : 김민전 · 최수진 · 서지영
주호영 · 조경태 · 조배숙
김예지 · 최보윤 · 정성국
김미애 · 조정훈 · 광규택
신성범 · 김 건 · 이소희
박수영 의원(16인)

제안이유 및 주요내용

현행법은 퇴직공직자가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하거나 공정한 직무수행을 저해할 가능성을 고려하여 퇴직 전 소속하였던 부서 또는 기관의 업무와 밀접한 관련성이 있는 기관에 취업하는 것을 제한하고 있으나, 변호사 또는 회계사 등의 자격증을 소지한 공직자는 각각 법무법인등, 회계법인, 세무법인에 제한 없이 취업할 수 있도록 예외를 두고 있음.

그러나 일부 자격증 소지자에 대해서만 예외를 두는 것이 공직자의 이해충돌을 방지하기 위해 마련한 현행 제도의 목적을 고려하였을 때 부적절한 측면이 있음. 특히 퇴직 전 수사 및 심리·심판과 관계되는 경찰 업무를 수행한 변호사 자격증을 보유한 경찰공무원이 퇴직 후 법무법인에 취업하는 사례가 빈번해짐에 따라 전관예우를 통한 유착

의혹과 수사 공정성 논란이 제기되고 있음.

이에 수사 및 심리·심판과 관계되는 경찰 업무를 수행한 변호사에 관하여 취업제한 예외 규정을 적용하지 못하도록 함으로써 이 법에 따른 취업제한기관에 취업을 하려는 경우 관할 공직자윤리위원회의 승인을 받도록 하려는 것임(안 제17조제7항).

공직자윤리법 일부개정법률안

공직자윤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17조제7항에 후단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이 경우 퇴직 전 5년 동안 수사 및 심리·심판과 관계되는 경찰 업무를 수행한 변호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.

부 칙

제1조(시행일)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제2조(변호사의 취업제한에 관한 적용례) 이 법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퇴직한 취업심사대상자부터 적용한다.

